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민간기록물 관리체계 및 보존지원 강화〉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11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기록물관리 총괄체계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안 제9조)	7
2. 공공기관 기록관리 및 이관 체계(안 제14조의2 및 제19조)	13
3.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안 제15조)	20
4. 국가지정기록물 제도(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29
5.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안 제45조의2)	3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17.
3. 회 부 일 : 2026. 4.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 및 기록관리 체계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록물 수집·보존·활용 등의 공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은 국가가 민간기록물을 적극적·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 등의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록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기록물의 이관 방식에 대한 특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 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록물 발굴 및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복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조정함(안 제9조제1항).
- 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등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원 및 보존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 다. 기록관 등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 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심의 사항 중 일부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9항 및 제10항).
- 마. 전자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등을 한 경우에는 이관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정보가 많고 식견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간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7항).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기록물관리 총괄·조정 기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복원·보존 지원 기능을 정비하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및 전자기록물 등의 이관 특례를 정비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기록물의 발굴·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지정기록물 및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 분	관련 조항	주요 내용
민간기록물 관리의 총괄·지원	제9조제1항·제2항제10호·제5항	민간기록물 관리 지원을 국가 기록관리의 총괄 범위에 포함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복원·보존 대행 및 지원 근거를 신설
준기록관 및 이관체계	제14조의2, 제19조제2항·제3항	준기록관 제도를 신설하여 기록관·특수기록관 비설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화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체계에 편입
기록물 보존관리 기준	제19조제1항	기록물 관리사항에 보존방법 및 보존장소를 추가하여 장기 보존관리 기준을 보완
전자기록물 이관 특례	제19조제4항	전자기록물 외에 전자화기록물까지 이관 특례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술적 처리 등을 통한 이관 간주 근거 마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제15조제1항제7호·제9항·제10항	전문·특별위원회 심의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위원장의 자료제출·의견진술·보고 요청권을 신설하여 심의의 전문성 및 자료확보 기능 강화
국가지정 기록물 발굴	제43조제5항·제7항·제8항	지정증서 교부 및 국가지정기록물추천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능동적 발굴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45조의2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 신설로 지역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지정·보존·관리 근거 마련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 등 공공기록물에 적용됨.¹⁾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 》

구 분	법적 근거	적용 대상
국가기관	법 제3조제1호	국가의 입법·사법·행정기관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 제3조제1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행령 제3조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시행령 제3조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시행령 제3조제3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특별법상 법인	시행령 제3조제4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문화원 및 특별법으로 설립된 조합·협회는 제외
각급 학교	시행령 제3조제5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한편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하되,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독자적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²⁾을 설치·운영하는 분권적 협력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국가기록원은 국가 차원의 기록물관리 정책과 표준의 마련, 교육, 지도·감독 및 평가, 기록물관리기관 간 연계·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함.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관리를 위하여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함.

제안이유는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적극적·선제적으로 발굴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지역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관리 지원 기능을 보완하고, 국가기록위원회 위원장의 자료요청권과 전자기록물 등의 이관 특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개정 배경으로 들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기록물 발굴·보존 기반을 확충하고, 기록관 비설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전자기록물 이관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관 기록물,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복원·보존 등을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기록물 관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민간기록물 발굴·보존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사항이 기록물관리기관 간의 역할 분담, 기록물 이관의 기준과 절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의 설계와 관련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간 정합성 및 현행 기록관리 체계와의 조화 여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기록물관리 총괄체계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안 제9조)

안 제9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법정 업무에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기록물,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복원·보존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10. (생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④ <u>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신설></u>	③ (현행과 같음) ④ <u>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u> <u>-----운영하게 할--.</u> ⑤ <u>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 기록물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원, 보존(보존을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u>

가. 총괄·조정 권한의 범위 (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1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해 온 기록물관리 총괄·조정 기능을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기록물관리 정책의 추진력과 기관 간 조정 기능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장관의 총괄·조정 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로 정함에 따라,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각급 학교 등³⁾의

기록물관리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현행 체계를 고려할 때,⁴⁾ 장관의 총괄·조정은 해당 기관의 개별 기록물관리 사무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대체하는 의미라기보다, 기록관리 정책·표준·교육·기술지원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조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장관의 총괄·조정 대상과 헌법기관 및 지방 기록물관리기관과의 관계에서 권한이 행사되는 범위를 조문상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 지원 (안 제9조제1항·제5항)

개정안은 민간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총괄·조정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를 제외한다)
5.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사무로 명시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기록물,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원·보존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전문 인력·시설 및 기술이 필요한 기록물의 훼손·멸실을 방지하고, 보존가치 있는 기록물의 관리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안 제9조제1항은 민간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만을 장관의 총괄·조정 사무로 규정하고, 제5항에서 지원 대상으로 추가한 “국외기록물”은 언급하지 않고 있음. 또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도 국외기록물의 관리·지원 필요성이나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

“국외기록물”은 현행법상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고, 개정안에서도 제9조 제5항에서만 사용되고 있어 그 범위가 불분명함.

따라서 국외기록물을 제5항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념과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지원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보존·관리 및 지원 권한 (안 제9조제2항제10호 및 제5항)

안 제9조제2항제10호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에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추가하려는 것임. 다만 현행법상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영구보존·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⁵⁾ 현행 규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감안하여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로 표현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안 제9조제5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복원·보존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대신 수행”은 그 대상과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 범위와 기록물 소관기관의 관리책임 간 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따라서 국가기록원의 전문 인력·시설 및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기록물,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 보유·관리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려는 취지라면,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직접 수행까지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보급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기록물, 수행 요건, 요청 또는 협의 절차, 소관기관의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공공기관 기록관리 및 이관 체계(안 제14조의2 및 제19조)

안 제14조의2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인 “준기록관”이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9조는 기록물 관리사항에 보존방법 및 보존장소를 추가하고, 준기록관을 기록물 이관 체계에 포함하는 한편,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이관 대상과 전자기록물·전자화기록물의 이관 특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4조의2(준기록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이하 “준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u>보존기간</u>,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u>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u>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u>다만,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u>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 ----- -----<u>보존기간·방법·장소</u>,----- -----. ② ----- -----<u>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준기록관</u>-----<u>. <단서 삭제></u>

현행	개정안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⑤ 특수기록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③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준기록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④ ----- ----- ----- -----와 전자기록물이 아닌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화기록물”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등을 한 경우에는 이관한 것으로 본다. ⑤ 특수기록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 ----- ----- ----- ----- ----- -----. ⑥ ~ ⑨ (현행과 같음)

현행법령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⁶⁾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가 기록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⁷⁾ 따라서 안 제14조의2는 현행 시행령상 지정 부서의 법적 지위를 “준기록관”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가. 준기록관의 설치 및 역할(안 제14조의2 및 제19조제2항)

안 제14조의2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도 기록관리 업무의 담당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관 대상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이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공공기관 전반의 기록관리 연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준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록관 설치 여부는 기관의 유형뿐 아니라 기록물 생산량 또는 보존대상 기록물의 규모와도 연계되어 있음.⁸⁾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특수기록관) 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 기록관·특수기록관 및 비설치 공공기관 》

구분	기록관	특수기록관	기록관·특수기록관 비설치 공공기관
설치·운영 주체	시행령상 설치 대상 공 공기관의 장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일정 공공기관의 장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
설치 대상	<u>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 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u> 공공기관	<u>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u> 등 특수 업무와 관련된 기관	<u>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 기관</u>
주요 대상 예시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교육지 원청, 일정 군 기관, 국· 사립대학 등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공수처, 검찰청, 방위사 업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각 군 본부 등	기록관 설치 기준에 미 달하거나 시행령상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설치 방식	독립된 기록관 설치·운영	기관이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계획을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별도 기록관 없이 내부 지정 부서가 기록관 업무 수행

따라서 준기록관의 설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
으로 규정하여 대상 범위를 법률상 보다 명확히 하고, 기록관·특수기록관
설치 대상과의 관계를 하위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1조(특수기록관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기록관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할 군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
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육군·해
군·공군본부 및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 기관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나. 기록물 관리사항 및 이관 대상(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19조제1항은 기록물의 관리사항에 보존기간 외에 보존방법 및 보존장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기록물은 종이·전자·시청각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고, 장기 보존 여부는 보존기간뿐 아니라 보존방식, 저장 환경 및 보존장소와도 관련되므로, 이를 법률상 관리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책임의 명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임.

안 제19조제3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대상을 현행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는 기록물의 유형·가치 및 디지털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이관 대상을 탄력적으로 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은 기록물의 관리주체와 보존책임을 개별 공공기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장기보존 체계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의무에 관한 기본사항임. 따라서 이관 대상의 기준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헌법 제75조⁹⁾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영구보존 필요성, 국가적·역사적 가치 또는 장기적 활용 필요성 등 이관 대상 기록물 판별에 관한

9)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록물 유형·보존기간 및 이관시기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전자기록물 및 전자화기록물의 이관(안 제19조제4항)

안 제19조제4항은 전자기록물 및 전자화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등을 한 경우, 해당 기록물을 이관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전자기록물의 경우 기록물 자체를 물리적으로 이전하지 않고 관리권한을 기록관·특수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식의 이관 특례¹⁰⁾를 전자화기록물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전자기록물을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로 정의하는 반면, 전자화기록물은 “전자기록물이 아닌 기록정보자료”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종이문서·도면·사진·음성·영상 등 비전자 기록정보자료 자체를 전자화기록물로 보려는 것인지, 또는 그러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결과물을 전자화기록물로 보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¹¹⁾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1.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전자기록물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11) 「전자정부법」

또한 현행 제19조제4항은 전자기록물의 이관 방법을 “해당 기록물의 관리 권한만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등을 한 경우” 이관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이관”이 성립하기 위하여 전자기록물 등 관리권한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지, 또는 전자화·전송·저장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조치만으로 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개정조문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움.

기록물 이관은 관리주체와 보존책임을 변경하는, 기록물관리의 중요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에서 전자화기록물의 개념, 이관 특례가 적용되는 기록물의 범위, 관리권한 이전 등 이관으로 의제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3.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안 제15조)

안 제15조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 심의사항을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심의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원장이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의견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u>위원회의</u>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7.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u> ----- -----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⑨ <u>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사항 중 일부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나 특별</u>

현행	개정안
<신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u> ⑩ <u>위원회의 위원장은 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의견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 ⑪ -----제10항까지에서----- ----- ----- -----.

현행법은 기록물관리 기본정책의 수립,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지정 및 기록물관리 제도의 개선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¹²⁾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헌법기관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1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승인 및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 참여함.¹³⁾

가.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의의 효력(안 제15조제9항)

현행법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⁴⁾ 전문위원회는 기록물관리 관련 사항의 전문적인 조사·심의를, 특별위원회는 복수의 전문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구성할 수 있음. 전문위원회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됨.¹⁵⁾

13) 제7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026년 4월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장에는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한국현대사 교수가 위촉되어 있음(임기 2026.4.22.~2029.4.23.).

- 위촉직: 민간위원 13인

- 당연직: 국회기록원장,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장, 헌법재판소 자료조사과장, 중앙선관위 선거기록보존소장,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 경남기록원장

1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둔다.

1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③전문위원회위원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전문위원회를 주관한다.

④위원은 소관 분야 전문가 및 관계기관 공무원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전문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구성·운영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

구분	위원 자격·구성	위원장	구성상 특징
국가기록 관리위원회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대통령기록관의 장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장 간 협의로 선정된 기관장 1명 -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간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 법정 심의기구 - 기록관리 기본정책 등 주요 사항 심의
전문위원회	- 소관 분야 전문가 - 관계기관 공무원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 추천 후 위원장이 임명·위촉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 본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공무원 참여 가능 - 전문적 조사·심의
특별위원회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 본위원회 위원 외에 전문위원회 위원도 참여 가능 - 복수 전문위원회 관련 사항 또는 특별사안 심의

기록관리 제도는 행정·법률·정보기술·보존기술 등 여러 전문 분야와 관련되므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기술적·전문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다만 안 제15조제9항은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고 있어, 법률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사항이 본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종결될 수 있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기록관리의 기본 방향이나 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시행령은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전문·특별위원회의 전문적 검토 결과를 활용하면서도 본위원회가 법정 심의기구로서 주요 내용을 확인·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둔 것으로 이해됨.

이러한 점에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심의 결과의 본위원회 보고 및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운영의 전문성·효율성과 책임성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위원장의 자료요청권 및 응답의무(안 제15조제10항)

안 제15조제10항은 위원장이 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의견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기록물관리 현황, 제도운영 실태, 관계기관의 의견을 파악하여 법정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현행 시행령도 위원장이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 심의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⁶⁾

다만 현행 시행령상 제료제출 요청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해당하며, 요청 상대방에게 응답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지는 않음. 한편 「국회기록원법」은 국회기록원장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자료요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⁷⁾

정보공개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등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정책 협의기구도 심의에 필요한 자료·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자·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 시행령상 협조요청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요청 상대방에게 응답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음.

1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⑥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7) 「국회기록원법」

제11조(자료의 요청) 원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심의·조사 기능 위원회의 자료요청 권한 및 응답 의무 》

위원회	근거 법령	자료요청 권한 및 응답 의무			
		요청주체	요건	범위 및 내용	응답 의무
국가기록 관리 위원회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0항 신설안	위원회의 위원장	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경우	공공기관에는 <u>자료의 제출을 요청</u> 할 수 있고, 그 소속 공 무원 또는 임직원에게는 <u>의 견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u> 할 수 있음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u>따라야 함</u>
국가기록 관리 위원회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	위원회의 위원장	법 제15조제1 항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u>자료의 제출 요청</u>	명시적 <u>응답 의무 없음</u>
정보공개 위원회 (행안부 장관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18)	위원회	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u>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 을 요청</u> 할 수 있고, 관계 공 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 의 <u>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u> 할 수 있음	명시적 <u>응답 의무 없음</u>
환경보전 위원회 (기후부 장관 소속)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19)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u>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u> , 필요한 <u>자료의 제 출을 요청</u> 할 수 있음	명시적 <u>응답 의무 없음</u>
보훈심사 위원회 (보훈부 장관 소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 및 제2항	위원회	법 제74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 의·의결과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의결 관련 <u>자료 제출을 요구</u> 하거나, 기재출 <u>자료의 보완·추가를 요구</u> 할 수 있음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u>따라야 함</u> ²⁰⁾

자료: 관련 법령을 토대로 직접 작성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19)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는 같은 법 제74조의8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 및 보훈보상 관련 개별 사건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 이는 개인의 법적 지위 및 보훈급여 수급 여부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전제로 하는 심의·의결 구조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정책심의기구로서의 성격, 현행 시행령상 협조요청 방식 및 유사 기구의 자료확보 제도를 고려할 때, 위원장에게 법률상 자료제출·의견진술·보고 요청권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임직원에게 응답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이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을 위원회의 법정 심의사항 또는 개별 심의안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요청 대상·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원장 요청권의 적용(안 제15조제10항)

현행법상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포함됨. 따라서 안 제15조제10항에 별도의 적용 예외를 두지 않는 이상,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위원장의 자료제출·의견진술·보고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한편,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소관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국가 기록관리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헌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기록물관리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기관은 아님.

따라서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에 위원장의 요청에 대한 응답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각 기관의 기록물관리 권한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헌법기관의 경우 재판·수사·선거·국가안보 또는 국회 고유사무와 관련된 비공개기록물 등에 관한 자료제출 등이 요청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용 제외사항 또는 별도의 요청 절차를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위원장의 요청권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 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요구 또는 사실상 감독수단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요청의 목적·대상·자료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신청·조사·통보·
해제, 변동사항 신고 및 보존·관리 관련 주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지정 시 증서 등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지정기록물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30 –

현행	개정안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u>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u> 신고하여야 한다.	<u>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 ----- ----- ----- ----- ----- ----- <u>행정안전부 장관에게</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① <u>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u> 은 국가지정기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시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① <u>행정안전부장관</u> 은----- ----- ----- ----- ----- ----- -----.
② <u>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u> 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보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보존할 수 있다.	② <u>행정안전부장관</u> 은----- ----- ----- ----- ----- ----- -----.
③ <u>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u> 은 국	③ <u>행정안전부장관</u> 은-----

현행	개정안
가지정기록물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략)	----- ----- ----- ----- -----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지정기록물 제도는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지정하고, 보존시설 설치 지원, 관리위탁 및 복제·사본 제작 등을 통하여 보존·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임. 국가지정기록물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계속 보유·관리하면서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구조임.²¹⁾

국가지정기록물 관련 권한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민간기록물 관리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도록 한 안 제9조제1항과 체계를 맞추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지정증서의 교부와 국가지정기록물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민간기록물 소유자·관리자의 참여와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의 발굴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시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안 제45조의2)

안 제45조의2는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에 적용되는 국가지정기록물 제도와 별도로, 지역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5조의2(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보존 등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변동사항 신고, 보존시설 지원, 관리위탁 및 복제·사본 제작 등을 통하여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역의 역사·문화·경제 및 생활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민간 기록물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발굴·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지정기록물 제도만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지역기록유산의 보존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안 제45조의2제1항은 지정 대상을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로 정하고 있어, 국가적 보존가치와 구별되는 지역적 보존가치의 내용과 판단기준이 분명하지 않음. 이에 그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보존 등에 관하여 국가지정기록물 관련 규정인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에는 지정·해제, 심의, 추천위원회 및 대통령령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각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제45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되는 제43조제1항 및 제6항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국가지정기록물 제도 준용에 따른 쟁점》

준용 조문	국가지정기록물 제도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 적용 시 쟁점 (“행안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준용한 경우)
제43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u>국가기록관리위원회</u> 심의를 거쳐 <u>국가지정기록물</u> 을 지정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u>심의위원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중복</u> 적용될 수 있고, “국가지정기록물” 관련 문언이 그대로 적용될 우려
제43조 제6항	행정안전부장관이 <u>국가기록관리위원회</u>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을 해제	지정 해제 시 <u>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u> 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 심의와의 관계가 불명확
제43조 제7항	행정안전부장관이 <u>국가지정기록물추천위원회</u> 를 구성·운영 가능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의 발굴·추천을 위한 <u>별도 추천위원회 설치 필요성 및 지방 심의위원회와의 기능 관계가 불명확</u>
제43조 제8항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u>대통령령으로 위임</u>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u>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u> 하는 명시적 위임근거가 불명확

따라서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포괄적으로 준용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에 적용할 조항과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국가지정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로 보도록 하는 등 필요한 용어와 심의 절차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8